

1998. 2. 19

# 檢 討 報 告 書

충청북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#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개정 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2.19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○ 제안 : 1998년 2월 9일 제출

○ 회부 : 1998년 2월 9일

3. 제안이유

○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소규모 중학교의 분교장 개편

4. 주요골자

○ 소규모 중학교 분교장 개편 (1개교)

- 청풍중학교 →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 (제천시 청풍면)

5. 검토의견

○ 교육법 제82조, 제85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107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, 그리고 '98 학생수용계획 지침 ('97.2.21)에 의거

○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원하는 본교유지 또는 분교장개편 방안과 통폐합 기준에 따른 폐교 방안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다. 이 지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 농현상에 따른 감소가 아닌 국가시책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인한 감소현상으로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청풍중학교를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으로 개편, 존속시키려 하는 것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또한, 향후 농촌지역 학생들의 시내 전학을 줄이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 배치가 시급한 사안임